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 신고 포상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 1. 8)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동일한 내용의 1차 입법예고(2020. 5. 27. ~ 7.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운영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 별표 3 제8호 참고사항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로 하며, 같은 표 제57호 참고사항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고지서 앞쪽 중 납부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고지서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납부안내
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
② 신용카드 납부 - (http://njjy.mafra.go.kr/)
③ 인터넷지로 납부 - (https://www.giro.or.kr)
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⑤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뒷면 참조

별지 제55호서식의 용도변경신청내역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규모”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	------	------------------------------------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농업인 []신규영농 []주말·체험영농 []법인 등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시·군	구·읍·면	리·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m ²)
	⑩농 지 구 분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 취득 원인	
⑫ 취득 목적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지취득자(신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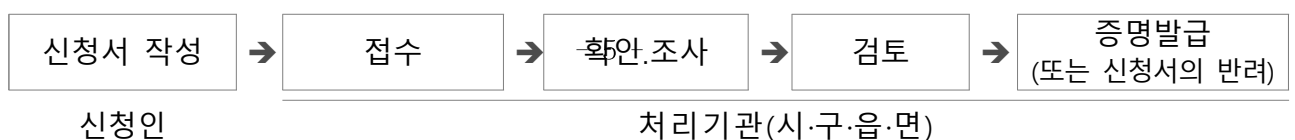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재시 유의사항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 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⑪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임대차할 부분		면적	m ²

[부대물건의 표시]

과수	그루	설비/시설	농막
----	----	-------	----

[계약내용]

연간 임차료		임차료 지급일		임차료 지급방법	☐ 현금 금 _____ 원정 ☐ 현물
--------	--	---------	--	----------	---

제1조(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_____년____월____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년____월____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비용부담) 임차농지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한 비용(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범위를 넘는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4조(임대차 농지의 사용·관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민법, 판례,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농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갱신) 임차기간이 만료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중개인	사업장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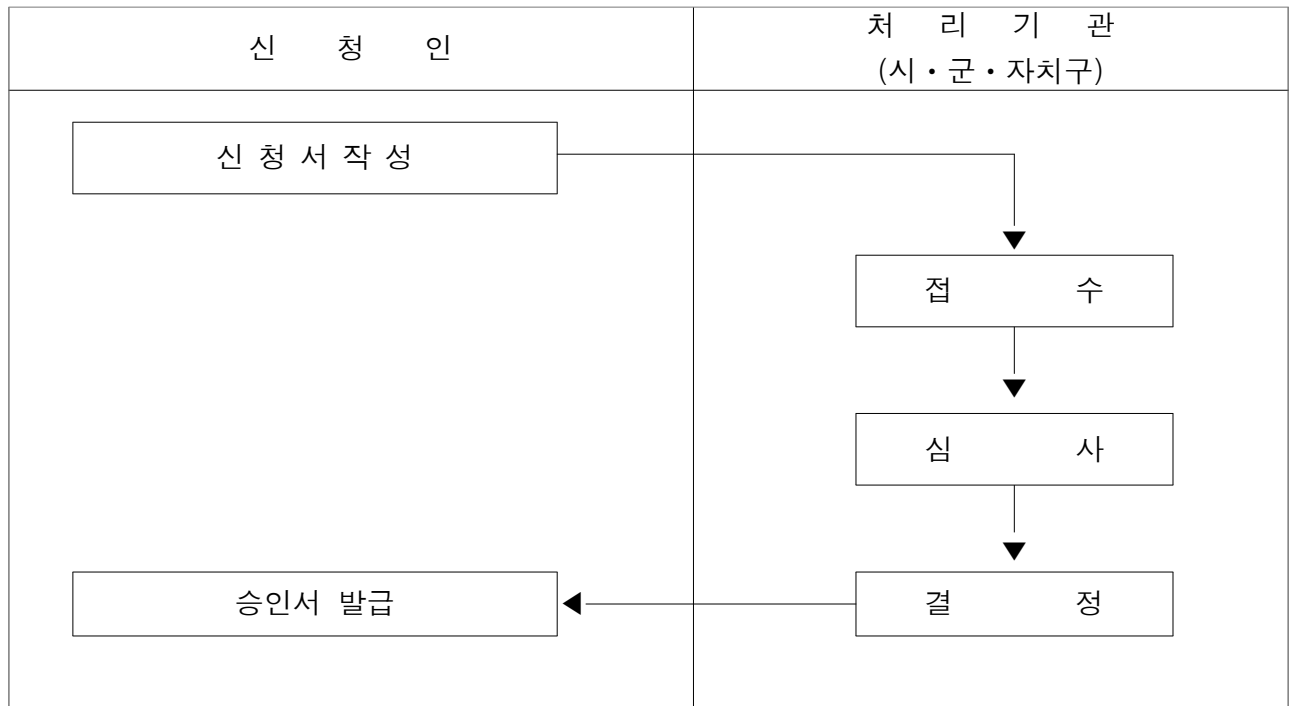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허가등”이라고 한다)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 :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
※ 본인확인 방법 : 공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 인터넷 지로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로번호 입력(OCR 7001293) 후 이용기관 확인(한국농어촌공사) → 납부고객조회번호(통지번호), 납부금액, 체크번호, 휴대폰번호 → 계좌이체
-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 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②----- -----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u>별표 1</u>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u>별표 13</u> 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1. ----- ----- ----- ----- <u>별표 1의3</u> 및 「 <u>물환경보전법 시행령</u> 」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운영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u>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 선할 수 있다.
